

시 민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6046
결재일자	2024.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04/04
협조	주무관 주무관	

2024년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사업 추진 계획

2024. 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2024년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추진 계획

재가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을 돕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I 추진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제25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지침)

II 현 황

- 서울시 한부모 가구 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서울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하는 추세임
 - 이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미성년자녀를 둔 가구가 감소하는 추세임
 - ※ 서울시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수 : 818,685('20) → 785,311('21) → 756,376('22)
- 저소득 한부모 가구 또한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체 한부모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약 10%로 계속적 지원이 필요함
(단위 : 가구, %)

구분	2020	2021	2022
전체 가구 수	4,126,524	4,191,171	4,252,134
한부모 가구 수 ¹⁾	298,389	290,818	285,878
저소득 한부모 가구 수 ²⁾	31,425	29,486	28,261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 비율 (B/A)	7.2	6.9	6.7
한부모 가구 중 저소득 한부모 가구 비율 (C/B)	10.5	10.1	9.9

※ 출처 : 통계청 '각 년도, 인구총조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 1) 한부모 가구는 만 18세 미만(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 이혼, 사별인 모 또는 부를 의미
- 2) 저소득 한부모 가구는 중위소득 63% ~ 72% 이하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한부모 가족을 의미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구성 현황

(단위 : 가구)

구분	2021	2022	2023
계	29,486	28,261	27,758
모자가족	23,222(78.8%)	22,494(79.6%)	22,255(80.2%)
부자가족	5,605(19.0%)	5,178(18.3%)	4,980(17.9%)
청소년 모자가족	254(0.8%)	213(0.7%)	159(0.5%)
청소년 부자가족	21(0.1%)	15(0.1%)	11(0.1%)
조손가족	384(1.3%)	361(1.3%)	353(1.3%)

※ 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III 2023년 추진실적

- **법정 한부모가족**('23년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육비 등 **총 35,948가구(월평균) 지원**
 - '22년 대비 184가구 증가(0.5%)
 - 증가사유 :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을 중위 58% → 60%로 상향

(단위: 가구)

구분	계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육비
2023	35,948	23,745	2,445	1,241	8,491	26
2022	35,764	23,673	2,331	1,165	8,569	26
2021	32,642	20,962	1,624	960	9,068	28

- **법정 청소년 한부모가족**('23년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총 205가구(월평균) 지원**
 - '22년 대비 33가구 감소(13.9%)
 - 감소사유 : 인구 및 출산율 감소 영향

(단위: 가구)

구분	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2023	205	184	1	20
2022	238	223	1	14
2021	206	187	1	18

- **서울형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 90%이하) **신설 및 아동양육비 추가지원 총 183가구(월평균) 지원**

-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비(연 154만원 이내)

(단위: 가구)

구분	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2023	183	183	-	-

○ **미혼모·부 초기지원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서비스 395가구 이용**

- '22년 대비 175가구 증가(79.5%)
- 증가사유 : 지원대상 확대(미혼모·부 → 청소년한부모+25세 이상 미혼모·부)
 -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서 수행
 - ※ '24년도부터 가족센터에서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

○ **한부모 가족(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생활코디네이터 상담 및 가사지원 서비스 총 20,384건 지원**

- '22년 대비 9,494가구 증가(87.2%)
- 증가사유 : 가사지원서비스 지원 확대(중위 120% → 150%로 상향 등)

(단위 : 건)

구 분	계	생활코디네이터	가사지원서비스
2023	20,384	3,316	17,068
2022	10,890	1,857	9,033
2021	7,653	1,586	6,067

○ **2023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계	94,599	78,155	82.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80,882	65,190	80.6%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75,898	60,787	80.1%	국비50%,시비50%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3,675	3,479	94.7%	시비10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828	666	80.4%	국비50%,시비5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추가지원(자체)	440	220	50.0%	시비 100%
전출금(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	41	38	92.7%	시비1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11,267	10,536	93.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10,119	9,433	93.2%	시비1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142	137	96.5%	국비50%,시비5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360	346	96.1%	국비50%,시비5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510	489	95.9%	국비30%,시비70%
시설 배치 사회복지무원 인력경비 지원	35	30	85.7%	국비100%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101	101	100.0%	국비100%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2,450	2,429	99.1%	시비100%

IV

2024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로 실질적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부터 자립까지 단계별 지원 확대

□ 주요 개선사항

①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

구 분	2023년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소득기준 : 중위 60% 이하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소득기준 : 중위 63% 이하
	◇ 양육비 지원금액 : 월 20만원 ◇ 양육비 지원연령 : 18세 미만	◆ 양육비 지원금액 : 월 21만원 ◆ 양육비 지원연령 : 18세 미만*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청년 한부모가족	◇ 교통비 지원대상 : 18세 미만(연도 기준 만나이)의 중·고등학생 자녀 ◇ 교통비 지원금액 : 분기 86,400원	◆ 교통비 지원대상 : 13세~18세 자녀 ◆ 교통비 지원금액 : 분기 108,000원
	◇ 저소득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 월 35만원	◆ 저소득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 2세 이상 자녀 : 월 35만원 - 2세 미만 자녀 : 월 40만원

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구 분	2023년	2024년
생활인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시간제) - (일반형)11,080원, (종합형)14,400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시간제) - (일반형)11,630원, (종합형)15,110원
시설운영	◇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 (나형)20%, (다형) 15%	◆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 (나형)30%, (다형)20%
	◇ (매입임대) 공급 호수 : 24호	◆ (매입임대) 공급 호수 : 34호
	◇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 80만원	◆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 100만원
	◇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 1.7%	◆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 2.5%
입소기준	◇ 항목별 지원비 인상률 : 2.5%	◆ 항목별 지원비 인상률 : 3.5%
	◇ 중위소득 100% 이하	◆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 24세 이하 긴급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입소 가능

③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구 분	2023년	2024년
생활코디네이터 품 질 향 상	◇ 3급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활동	◆ 2급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신설 및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가사서비스 참여가구 확대	◇ 1가구당 월 4회 지원, 643가구 지원	◆ 1가구당 연 22회 지원, 650가구 지원

□ 예산 현황

○ '24년 96,285백만원으로 '23년 94,599백만원 대비 1.8%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세부사업)	예산액		증감	증감률	비 고
	2023년	2024년			
계	94,599	96,285	1,686	1.8%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	80,882	82,096	1,214	1.5%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75,898	77,314	1,416	2%	국비50%,시비50%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3,675	3,916	241	7%	시비100%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828	372	△456	△55%	국비50%,시비50%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추가지원(자체)	440	494	54	12%	시비100%
전출금(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	41	0	△41	△100%	시비1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11,267	11,885	618	5.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10,119	10,213	94	0.9%	시비1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142	515	373	263%	국비50%,시비5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360	298	△62	△17%	국비50%,시비5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510	614	104	20%	국비30%,시비70%
시설 배치 사회복지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35	42	7	20%	국비100%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101	203	102	102%	국비100%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2,450	2,304	△146	△6%	시비100%

※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기준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며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

-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② 정산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③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 제외)

※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한 자로서 신청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가능 (단, 유전자 검사결과 사후 제출 필요)

- 조손가족의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저소득) 24세 이하 한부모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서울형) 24세 이하 한부모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인 가구

□ 지원기준

○ 연령기준 : 자녀의 나이가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 자녀가 만 18세를 넘었으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이 속한 달까지 (단, 아동양육비는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지원) 중인 경우 22세 미만)

○ 소득기준(2024년)

(단위 : 원/월)

Table with 6 columns: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Rows include 기준중위소득(100%),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증명서(63%)),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65%), 증명서(72%), 서울형급여(90%)).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4년 예산: 77,314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구 분		지원 대상	지원액	지원방법	지급시기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구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1인/ 월 21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20일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 월 5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20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1인/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 연 9.3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연1회 (7월)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가구/ 월 5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20일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24년 예산 : 3,916백만원, 시비 100%)

구 분		지원 대상	지원액	지원방법	지급시기
중위소득 63%이하	교통비	한부모가족의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녀	분기당 108,000원	대상자 계좌입금	분기별
중위소득 63%이하	교육비*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중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	입학금수업료 50%(실비)	해당학교 계좌입금	분기별

* 교육비의 50%는 교육청에서 지원(시:교육청=50:50)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4년 예산 : 372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구 분	지원 대상	지원액	지원방법	지급시기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비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 월35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20일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 월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지원)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한부모	연154만원 이내 - 학원비(월30만) - 교재비(월20만) - 학용품비(연9.3만)	등록한학원 또는 개인계좌 입금	수시지급 (신청시)
		(재학생 학습지원)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연154만원 이내 - 교통비(월 3만원) - 교복구입비 (1회 50만원 이내)		
자립 촉진수당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가구당/ 월10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 서울형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추가지원(자체)
(‘24년 예산 : 494백만원, 시비 100%)

구 분	지원 대상	지원액	지원방법	지급시기	
중위소득 90%이하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비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자녀	자녀 1인/ 월20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20일
중위소득 65%초과 90%이하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지원)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한부모	연154만원 이내 - 학원비(월30만) - 교재비(월20만) - 학용품비(연9.3만)	등록한학원 또는 개인계좌 입금	수시지급 (신청시)
		(재학생 학습지원)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연154만원 이내 - 교통비(월 3만원) - 교복구입비 (1회 50만원 이내)		
	자립 촉진수당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가구당/ 월10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① 시설 생활인(입소자) 지원

□ 항목별 지원비 지원 :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을 따름

- 지원대상 : 시설유형별 생활인 특성에 따라 개별 지원
- 시설별 적용 항목

시설유형	적용항목
생활지원시설·일시지원시설 * 보장시설의 경우	학용품비(초·중·고생), 부교재비(초·중·고생), 교양도서비·교통비(중·고생), 아동급식비
출산지원시설	특수치료비

※ 학용품비, 교통비 등 시에서 지원 받는 경우 중복신청 불가

- 항목별 지원기준(전년대비 3.5% 인상)

(단위 : 원)

구 분	학용품비(인/년)			부교재비(인/년)		교통비 (중고생, 인/240일)	아동 급식비 (인/365일)	미혼모 특수 치료비 (인/년)	주·부식, 취사 연료비 (인/일)	월동 대책비 (인/1월)
	초등생	중학생	고교생	초등생	중고생					
지원단가	28,970	47,465	50,291	65,008	103,531	실비	2,753	353,660	9,698	3,478

※ 교통비(실비) : 시설 소재지 마을버스 왕복요금

※ 주·부식 취사연료비, 월동대책비: 공동취사시설을 갖추고 실제 활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산재구리 구제군한이름)

- 일시지원시설의 경우 입소자 중 보장시설 비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저소득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 생활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63% 이하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지침)'에서 세부 제외대상자 확인 후 지급
- 지원기준 : 월 50천원/세대

□ 생활인 추가 지원

- 명절위문비 : 2회(설날, 추석), 10천원/인(개인지급)
-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 2회, 15천원/인(개인 또는 시설단위 집행)
- 건강·위생 지원비 : 40천원/인(가구 또는 시설단위 집행)
 - 용도 : 마스크, 영양(보충)제, 소독제·청소세제, 화장지, 생리대 등 위생용품 등
 - 가구단위 집행 시 사용내역(영수증) 증빙을 시설이 확인·보관 후 정산

□ 직업교육 등 자립 프로그램, 사회적응 훈련비

구 분	모·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일시지원복지시설	미혼모공동생활지원시설
지원내용	직업교육 등 자립프로그램 지원 : 120천원/인, 년			사회적응훈련비: 50천원/인,월 교육지원비: 100천원/인,월

□ 퇴소자 자립정착금

○ 적용대상 시설 및 지원금액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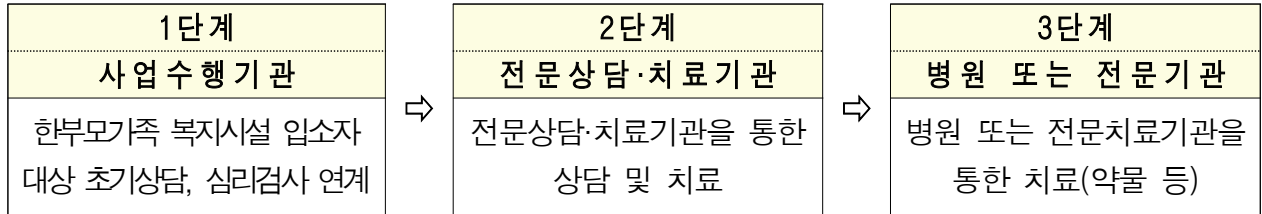
구 분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생활지원시설)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양육지원시설)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입소 후 퇴소세대	1) 24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세대 또는 2) 3개월 이상 직업교육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6개월 이상 취업하여 퇴소하는 세대	3개월 이상 직업교육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6개월 이상 취업하여 퇴소하는 세대	취업 후 12개월 이상 안정된 생활 후 퇴소하는 세대
지원금액	8,000	10,000	10,000	10,000

○ 신청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구비서류 : 직업교육 수료증, 자격증, 취업확인서(재직증명,경력증명) 등
- 취업확인 시 사업자등록증 등이 존재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인정하며,
대상자의 4대보험 가입 확인(단, 4대보험 미가입 시 대상자 급여입금 통장내역 확인)
- 타 시도 시설 입소자가 연속(입소신청 후 대기기간 포함)하여 서울시 소재시설에
입소할 경우 입소기간을 포함하되, 해당 시도 및 시설에 자립정착금 등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지급 되지 않도록 유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1회만 지급, 시설 재입소 시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지급 불가(타 시도 시설에서 퇴소자 자립정착금 받은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지원내용 : 심리검사비, 전문상담료 및 치료비, 집단상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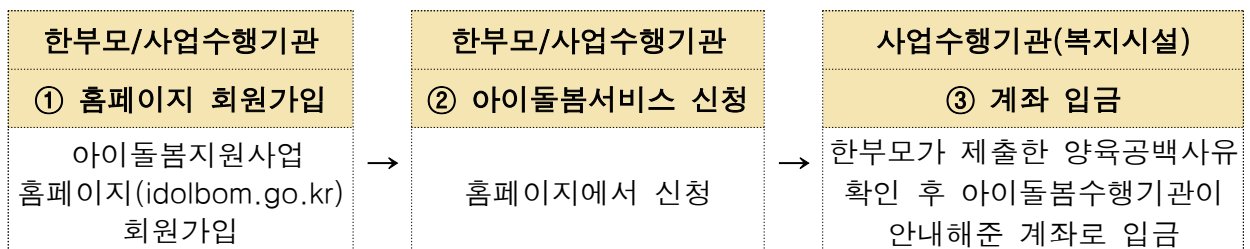


□ 입소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입소자
- 지원범위 : 병원비, 건강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 치료기관 통원시 교통실비 등
- 지원내용 : 1인당 연 35만원 이내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으로서,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및 1년 이내 시설 퇴소자
 - ▶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 입주자
- 지원요건
 - ▶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양육공백 기준(한부모의 취업, 학업(준비), 한부모가족의 질병 등)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
 - ▶ 한부모가족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 ▶ 서비스 이용 전 소득판정을 통한 본인 소득범위 확인 선행 필요
- 지원내용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본인부담금 부분), 기관연계 서비스 아이돌보미 교통비(실비 기준)
 - ▶ 생후 3개월 미만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관련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 ※ 생후 3개월 이상 아동 배상책임보험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입
- 서비스 이용방법



② 종사자 지원

□ 인건비

- 『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지침에 따름
-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종사자를 공개 채용·운용해야 함
 - 퇴사자 발생 시 시설 수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 예산범위 내 채용
- 인건비 지원 제외대상(시설 자부담)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의한 공개채용 위반 시
 -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기준 위반 시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주요 변경 사항

-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2.5% 적용, 정액급식비 월 2만원 인상
-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선제적 예방 대응방안 강화
 -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을 서울시 시설 경력 만 5년에서 만 3년으로 조건을 완화하여 대상 확대(연간 약 400여명 증가)
- 각종 휴가제도 확대 등으로 종사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자녀돌봄 휴가, 가족수당 및 대체인력 등 지속적 지원

③ 시설 운영 지원

□ 통합관리 운영비 :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을 따름

○ 시설유형별 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출산지원시설	출산지원시설 (보장시설제외)	양육지원시설 (보장시설제외)	생활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보장시설제외)	일시지원 복지시설
통합관리운영비 (인/월)	161,860	314,780	705,890	109,130	314,780	115,660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근거하여, 보장시설 여부에 따라 통합관리운영비 단가기준이 상이함에 유의

- 공공요금, 냉·난방연료비 등은 입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 및 사무공간에만 지원가능
- 통합관리운영비는 건물유지비(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하나 기능보강사업비로 추진이 곤란하고 긴급한 소요경비), 화재보험료, 공공요금, 수용비, 의약품비,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프로그램 운영비(회의 등 부대경비 포함),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사무용 PC포함), 당해연도 협회가입비, 종사자 여비·교육비 등 집행 가능
- ※ 그밖의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참고
- ※ 추후 사회복지시설 협회비 공통기준 등 별도의 기준이 수립될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기본 운영 지원

○ 기본 운영비

- 시설 기본 운영을 위해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지원 : 월 500천 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 월 500천원 추가지원
- ※ 미혼모 특성을 반영한 지원(연중 난방비, 하계 냉방비, 분유, 기저귀 등 아기용품 등)

○ 공동육아방 및 보육도우미

-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형 6개소, 공동생활형 1개소)
 - 공동육아방 : 구세군두리홈, 두리마을 공동
 - 보육도우미 : 출산지원시설 중 기본모자기본생활지원형(6)에 한함
- 지원기준
 - 공동육아방 : 운영지원비(인건비, 운영비 등) 74,298천원/연
 - 보육도우미 : 양육 영유아 1명 이상 1,000천원/개소, 월

○ 공기청정기 대여료 : 시설당 2대 지원(월 대여료 : 25천원/1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예산('24년) : 11,88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11,885	비 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10,213	시비1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515	국비50%,시비5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298	국비50%,시비5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614	국비30%,시비70%
시설 배치 사회복지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42	국비100%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203	국비100%

3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설치 및 기능)

□ 센터 현황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4층(흑석동)
- 수탁기관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센터장:이영호, 위탁기간: '22.1~'24.12.)
- 주요사업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자녀양육 및 자립역량 강화 통합지원

□ '24년 예산 : 2,30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304
사무관리비	건물 임차료	232
민간위탁사업비	사무용 가구 등 구매비	11
민간위탁금	인건비 및 복지포인트	532
	운영비	69
	사업비	1,460

V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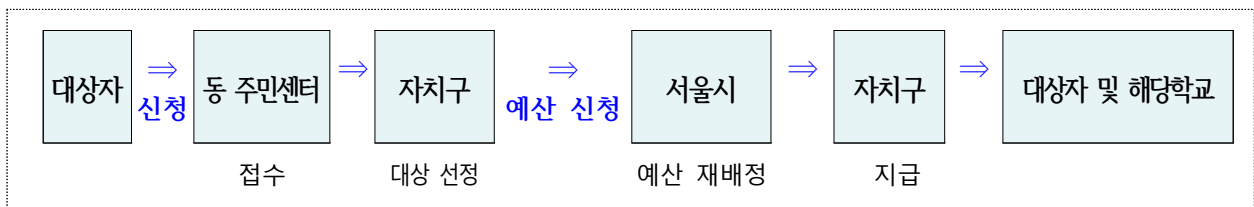
※ 본 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및 관련 법령·지침에 따름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일반 사항

○ 예산 신청 및 배정

- 소요예산 신청 (자치구 → 서울시) : 매분기 10일까지
- 사업비 재배정 (서울시 → 자치구) : 매분기 15일
- 자치구별 지급 (양육비·교통비 등) : 매월 20일(그 외 수시 및 분기별 지급)



□ 자치구 행정사항

○ 지원대상자 관리

- 혼인관계자 자격정비를 통한 복지급여 수급 적정성 강화 : 분기별 지급
- 타 복지급여 중복 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 학용품비 지급 전 해당학교로부터 지원대상자의 재학여부를 확인한 후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급여지급 계좌로 입금
 -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제한
 - ▶ 생활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제한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교육지원과 중복지급 제한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지급 전 해당학교로부터 지원대상자의 재학여부를 확인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급여지급 계좌로 입금
 - 급여별 지원 자격에 따른 대상자 관리 철저
 -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기본사항 및 자립활동 확인
 -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증빙자료 등 실적관리
- 부적정 수급자 대상자 관리
 - 소득·재산변동(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 등)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부당지급 사례방지 및 부당지급액 환수
 - 중점관리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 부정·부적정 수급자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하여 유형별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 금년도 변경되는 복지급여의 기준 및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급여 미지급 사례가 없도록 관리 철저
- 급여 중지(탈락) 후 급여 재신청에 따른 조사 등의 중복을 방지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소득 및 재산 등 조사된 내용 적극 활용

○ 지원 실적관리 및 보고

- 정기 : 분기별 보고(3월, 6월, 9월, 12월)
- 수시 : 예산이 부족할 경우 대비하여 실시 예정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① 시설 이행사항

□ 시설 안전 관리

○ 보험 가입

-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필수

○ 자체 안전점검

- 정기 : 시설장은 매 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후 구청장에 결과 제출
- 수시 : 정기 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 구조·설비가 취약해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점검기관에 수시 점검을 의뢰 후 결과를 구청장에 제출
 - ▶ 안전점검기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건설사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안전점검 미수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1항)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적극 활용**

- 점검분야 : 건축물·옥외시설 기반침하, 균열 및 건축마감 손상여부, 유지 관리 상태 등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조치 적극 이행 후 조치실적을 공단에 제출

○ 안전관리 **교육·훈련**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인(소유자,점유자, 관리자 등)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의거, 그 장소에 상시 근무 또는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함
-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에서 규정하는 내용 외의 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안전보건관리)」에 따름

□ 시설 생활인 인권 보호

- **진정함 설치 의무**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
 - 용지, 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국가인권위원회가 정한 규격) 비치
- **시설 생활인의 진정권 보장**
 - 생활인이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종사자는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 제공
-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보관,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정·부) 지정, 종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자체점검

□ 시설의 운영 내실화 노력

- 시설 내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시설 관리의 투명성·민주성 제고
 - 시설 내 운영위원회에서 공동생활규칙(안)을 마련 후, 입소자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름
- **생활인 만족도 조사 실시(연1회 이상)** 후 시설 서비스 개선에 반영
- 입소자 조기 자립을 위한 입소자 특성별 자립프로그램 개발·지원
- 입소자 생활상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담원 근무시간 등 필요사항 조정
- 입소가구 내 아동학대 가능성, 타 가구 입소아동 대상 폭력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입소아동 안전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체계 구축
- 입소자에 대한 특정 종교행위 강요, 부당한 제약을 주는 행위 금지
- 시설 종사자는 정부 지원사항 및 기타 지원정보를 수시 파악하여 입소가정에 제공하고 지원절차 등을 안내
 - ※ 출산지원시설의 경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안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세대주(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한 미혼 임신모 포함)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담 등을 통해 입소자 본인이 보호자에게 입소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조치**

□ 종사자 복무 관리 및 교육

- 시설별 종사자 복무규정 등 제규정 제정·운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전임하여야 하며, 시와 자치구가 승인하지 않은 타 업무 겸임 불가
 - ※ 상근의무 및 겸직 허용범위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종사자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8시간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 종사자 간 교대 근무하여야 함
- 입소자 복지를 위해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 복무시간의 탄력적 운영 가능
- 종사자 의무교육 등 이행
 - 의무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35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성범죄 신고의무(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긴급복지 신고의무(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 등 준수

□ 개정된 설치기준 준수

- 시설 유형 개편 이후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하위 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리모델링 등이 필요한 시설은 기능보강 신청 등으로 **2025년 10월 전까지 최종 설치기준 충족할 것**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기준

② 시·구 행정사항

□ 일반 사항

○ 예산 신청 및 배정

- 소요예산 신청(자치구 → 서울시) : 매분기 10일까지
- 사업비 재배정(서울시 → 자치구) : 매분기 15일

□ 자치구 행정사항

○ 시설 운영과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도·관리·감독

○ 시설 현황 변동사항 수시보고 및 정기적 시설현황 관리 철저

- 정기 : 시설 이용 인원, 입소대기기간 등 정기 시설현황 반기별 보고
- 수시 : 시설 설치 등 운영 변경사항은 수리 후 15일 이내 여성가족부 보고
 - 시설 설치·폐지신고, 기타 변경사항(시설장, 시설종류,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 변경 등)

○ 하·동절기(4월, 11월경) 및 취약시기에 여성가족부가 통보하는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및 안전점검 조사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고

- 주요 점검사항
 -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상태, 보험가입여부, 시설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
 - 취약시기 특성에 따라 급식시설 위생상태, 태풍·장마·폭우,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 점검

○ 입소자 수(현원)을 반영하여 예산 지원

※ 출산지원시설은 입소 중인 미혼모가 양육하는 영아 포함

○ 입소율이 저조하거나 운영상 역량이 부족한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 시설환경·접근성 개선, 복지서비스 등 역량 제고 등

□ 본 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안내」 및 관련법령·지침에 따름

※ 국고보조사업(기능보강, 매입임대주택, 사회복지요원 인력경비 지원)은 여성가족부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23.12월말 기준)

개정 전 명칭	개정 후 (23.10.12.)	시 설 명	개소일	운영주체 (법인)	소재지	직원(명)	정 원		현 원		입소자격 및 기간		
							세대	명	세대	명			
모 부 자 가 족 복 지 시 설 (8)	기본 생활 (7)	생활지원 시설 (8)	성심모자원	57.08.06	(사복)성심원	용산	5	20	40	14	30	(개정 전)18세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해오름빌	53.03.10	(사복)백산	용산	5	20	50	11	23		
			영락모자원	59.08.09	(사복)영락 사회복지재단	성북	5	24	64	18	38		(개정 후)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동광모자원	76.02.25	(사복)서울동광원	노원	5	20	45	13	32		
	부자		창신모자원	57.08.29	(사복)창신모자원	구로	5	20	60	18	52	입소기간 : (전) 3년 (최대 2년 연장가능) → (후) 5년 (최대 2년 연장가능)	
			평화모자원	53.09.20	(사복)평화원	구로	5	20	45	16	38		
	공동 (1)		부자	선재누리	14.11.07	(사복)대한불교 진각종유지재단	성동	8	20	60	11	24	(개정 전)18세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부자가족
				구세군하아름	10.12.13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법인	강서	3	5	15	5	10	(개정 전)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6)	미혼모자 기본생활 (6)	출산지원 시설 (가나형) (6)	구세군두리홈	54.05.21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	서대문	10		35		12	(개정 전)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부, 출산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의 경우 자녀와 동반입소 가능 (개정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임신·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에 한정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제1호의 모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등) 나. 혼인관계이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전 임신부 입소기간 : (전)1년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후)1년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애란원	60.04.01	(사복)한국 장로교복지재단	서대문	15		52		39		
			마음자리	05.08.19	(사복)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	강서	8		12		11		
			마포애란원	15.02.02	(사복)한국 장로교복지재단	마포	8		10		9		
			도담하우스	15.9.16	(사)깨달음과 나눔	송파	8		10		11		
			바인센터	18.12.04	(사)여의도청년 장학관	영등포	8		10		3		
	공동 생활 (10)	양육지원 시설 (9)	구세군디딤돌	08.07.29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	종로	2	5	10	4	8	(개정 전)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개정 후)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입소기간 : (전) 2년 (최대 1년 연장 가능) → (후) 3년 (최대 1년 연장 가능)	
			달빛동지	07.11.07	(사복)진각 복지재단	성북	3	10	20	4	8		
			꿈나무	13.07.05	(사복)평화 복지재단	구로	2	5	10	5	10		
			구세군 두리마을	14.01.02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	서대	3	10	20	4	8		
			애란모자의집	06.07.20	(사복)한국 장로교복지재단	서대	3	10	20	5	10		
			아름뜰	06.12.11	(사복)홀트 아동복지회	마포	3	10	20	4	8		
			생명누리의 집	09.08.24	(사복)동방 사회복지회	은평	2	5	10	3	6		
			애란영스빌	15.9.1	(사복)한국 장로교복지재단	마포	3	10	20	6	13		
	미혼 모 (1)	출산지원 시설 (다형) (1)	한남하우스	19.11.28	(사단법인)엄마의공간	강서	2	5	10	3	6	(개정 전)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개정 후)다.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 입소기간 : (전)2년 (최대 6개월 연장가능) → (후)2년 (최대 1년 연장 가능)	
			애란세움터	08.01.17	(사복)한국 장로교복지재단	강서	2	10	10	5	5		
일시지원 복지시설(1)	일시지원 시설 (1)	서울모자의집	03.01.01	(사복)리우복지재단	비공개	8		35		19	배우자 확대로 양육에 지장이 있는 모와 아동 (자녀동반 없이 모 혼자서도 가능) (개정 후)추가)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모 → 또 또는 부 입소기간 : (전)6개월 이내(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후)6개월 이내(최대 1년 연장 가능)		
계	25					131명		693명		433명			